|  |  |  |
| --- | --- | --- |
| **경외소득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잠정방법** (1998년 8월 12일 국세발[1998]126호 문건 인쇄•배포, 2016년 5월 29일 <국가세무총국의 전문(全文) 폐지와 일부 조항 폐지의 세무 부문 규장 목록 발표에 관한 결정>과 2018년 6월 15일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세무 부문 규장 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하여 수정)제1조 국가 세수 권익을 유지하고, 중국 경외소득(번역자 주: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하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과 유관 행정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국 경내에 주소지를 두고, 중국 경외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이하 ‘납세자’)에 적용한다. 제3조 납세자는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각종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하 ‘경외소득’)에 대해 세법과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아래 소득은 지불 장소가 중국 경외 소재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4.1 재직, 고용, 계약 이행 등의 원인으로 중국 경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4.2 재산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중국 경외에서 사용하고 취득한 소득 4.3 중국 경외의 건축물 및 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중국 경외에서 기타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4.4 중국 경외에서 각종 특허권 사용 허가로 취득한 소득 4.5 중국 경외의 회사, 기업 및 기타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자, 주식 배당금 및 배당금 소득 제5조 납세자의 경외소득은 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세항목을 확정하고, 그 납부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자의 경외소득은 유관 규정에 따라 파견단위에 지불하는 부분은 유효한 계약서 또는 유관 증빙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그 경외소득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제7조 납세자가 중국 경내의 회사, 기업과 기타경제조직 및 정부부문에 고용되어 있고 경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며 그 소득은 경내 파견단위가 지불 또는 부담하는 경우, 경내파견단위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세금은 경내파견단위가 원천징수를 책임진다. 그 소득을 경외 재직, 고용된 중방기구가 지불 및 부담하는 경우, 그 경내 파견(투자)기구에 세금 대리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상술한 경외 재직 및 고용된 중방기구라 함은 중국 경내의 회사, 기업과 기타경제조직 및 정부부문에 소속된 경외 분지기구, 대(영)사관, 자회사, 대표처 등이다. 제8조 납세자가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8.1 경외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8.2 경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리징수인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리징수인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 또는 징수하지 않은 경우 포함)제9조 중국경내의 회사, 기업과 기타경제조직 및 정부부문은 무릇 경외 파견직원이 있는 경우, 매 1양력 연도(이하 ‘연도’)종료 후 30일 내 주관세무기관에 경외 파견직원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경외 파견직원의 성명, 신분증 또는 여권번호, 직무, 파견국가와 지역, 경외근무단위 명칭과 주소, 계약기간, 경내•외 수입 상황, 경내 주소 및 세수납부상황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본 방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진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연도 종료 후 30일 내 중국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소득 원천국과 중국의 납세연도가 불일치하여 연도종료 후 30일 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국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소득 원천국의 납세연도 종료 및 세금 결산 후 30일 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만약 세법에 규정된 납세연도기간에 경외 근무를 완료하고 귀국한 경우, 귀국 후 다음달 7일 전까지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세자가 중국 경내와 경외소득 모두 있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각각 비용을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경외에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은 경외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세금완납증명서 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제13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 방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징수관리법 및 유관 법률, 행정법규와 일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범죄 혐의 건은 법에 의거 공안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주관세무기관은 파견단위 소재지의 세무기관을 뜻한다. 파견 단위가 없는 경우, 납세자 출국 전 호적 소재지의 세무기관이다. 호적 소재지와 일상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일상 거주지 세무기관을 뜻한다. 제15조 본 방법에서 미지한 사안은 유관 세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은 본 방법 규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과 결부시켜 실질적인 구체적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비안(번역자 주: 등록)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제18조 본 방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 규정과 본 방법이 저촉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 **境外所得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1998年8月12日国税发〔1998〕126号文件印发，根据2016年5月29日《国家税务总局关于公布全文废止和部分条款废止的税务部门规章目录的决定》和2018年6月15日《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部分税务部门规章的决定》修正）第一条 为维护国家税收权益，加强对来源于中国境外所得的个人所得税征收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以下简称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征管法）及其实施细则以及有关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第二条 本办法适用于中国境内有住所，并有来源于中国境外所得的个人纳税人（以下简称纳税人）。第三条 纳税人来源于中国境外的各项应纳税所得（以下简称境外所得），应依照税法和本办法的规定缴纳个人所得税。第四条 下列所得，不论支付地点是否在中国境外，均为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一）因任职、受雇、履约等而在中国境外提供劳务取得的所得；（二）将财产出租给承租人在中国境外使用而取得的所得；（三）转让中国境外的建筑物、土地使用权等财产或者在中国境外转让其他财产取得的所得；（四）许可各种特许权在中国境外使用而取得的所得；（五）从中国境外的公司、企业以及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取得的利息、股息、红利所得。第五条 纳税人的境外所得，应按税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确定应税项目，并分别计算其应纳税额。第六条 纳税人的境外所得按照有关规定交付给派出单位的部分，凡能提供有效合同或有关凭证的，经主管税务机关审核后，允许从其境外所得中扣除。第七条 纳税人受雇于中国境内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以及政府部门并派往境外工作，其所得由境内派出单位支付或负担的，境内派出单位为个人所得税扣缴义务人，税款由境内派出单位负责代扣代缴。其所得由境外任职、受雇的中方机构支付、负担的，可委托其境内派出（投资）机构代征税款。上述境外任职、受雇的中方机构是指中国境内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以及政府部门所属的境外分支机构、使（领）馆、子公司、代表处等。第八条 纳税人有下列情形的，应自行申报纳税：（一）境外所得来源于两处以上的；（二）取得境外所得没有扣缴义务人、代征人的（包括扣缴义务人、代征人未按规定扣缴或征缴税款的）。第九条 中国境内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以及政府部门，凡有外派人员的，应在每一公历年度（以下简称年度）终了后30日内向主管税务机关报送外派人员情况。内容主要包括：外派人员的姓名、身份证或护照号码、职务、派往国家和地区、境外工作单位名称和地址、合同期限、境内外收入状况、境内住所及缴纳税收情况等。第十条 依本办法第八条规定须自行申报纳税的纳税人，应在年度终了后30日内，向中国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个人所得税。如所得来源国与中国的纳税年度不一致，年度终了后30日内申报纳税有困难的，可报经中国主管税务机关批准，在所得来源国的纳税年度终了、结清税款后30日内申报纳税。纳税人如在税法规定的纳税年度期间结束境外工作任务回国，应当在回国后的次月7日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个人所得税。第十一条 纳税人兼有来源于中国境内、境外所得的，应按税法规定分别减除费用并计算纳税。第十二条 纳税人在境外已缴纳的个人所得税税额，能提供境外税务机关填发的完税凭证原件的，准予按照税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从应纳税额中抵扣。第十三条 纳税人和扣缴义务人未按本办法规定申报缴纳、扣缴个人所得税以及未按本办法第九条规定报送资料的，主管税务机关应按征管法及有关法律、行政法规和部分规章的规定予以处罚，涉嫌犯罪的依法移送公安机关处理。第十四条 本办法所称主管税务机关是指派出单位所在地的税务机关。无派出单位的，是指纳税人离境前户籍所在地的税务机关；户籍所在地与经常居住地不一致的，是指经常居住地税务机关。第十五条 本办法未尽事宜，按照有关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第十六条 各省、自治区、直辖市税务局可根据本办法规定的原则，结合本地实际制定具体实施办法，并报国家税务总局备案。第十七条 本办法由国家税务总局负责解释。第十八条 本办法从1998年7月1日起执行。此前规定与本办法有抵触的，按本办法执行。　 　　 |